

40년 묵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할 혁신위 내달 출범

건설 업역·업종 ‘리빌딩’ 시동

정부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개편에 시동을 건다. 업역 간 칸막이를 다시 정리하고, 정리된 칸막이에 따라 업종을 재조정할 후이를 토대로 시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지난 1976년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한 이후 무려 40년간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건설업 종류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겹치지만 같아입었을 뿐 생산체계는 사실상 그대로 굳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다 보니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확히 10년 전에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업역

종합·전문 칸막이 재조정
다양한 업종 통폐합 등 검토
시너지효과 위해 장기적으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발주기관 자율선택에 ‘무게’

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탓에 손에 쥘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후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장기간 수면 아래에 머물렀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가 생산체계 개편에 칼을 뽑아들었다.

국토부는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에 기초한 지금의 생산체계 개편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로 제시했다.

우선 기존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칸막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전문, 세부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업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무게가 실린다.

업역 개편안의 가닥이 잡히면 업역에 맞춰 다양한 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하거나 조정할지 검토하고, 업역과 업종 개편에 따라 등록기준을 고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때 업종·업역과 등록기준의 연계성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건설환경에 적합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과정에서 업역별·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로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진용을 꾸려 다음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성이 떨어졌다”면서 “업계와 전문가 등을 고루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업역규제 따른 업체간 갈등 해소 거래비용 최소화, 공정경쟁 유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생산체계 개편에 칼을 뽑아든 것은 그동안 건설산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종합건설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보다는 입찰과 영업능력을 키우는데 매몰돼 있고, 전문건설업은 저가 하도급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도급 시장 진출에 목을 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갈등과 충돌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업역뿐만 아니라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탓에 복합공사 진출이 어렵고, 일부는 업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등록 기준도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종합건설업과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없어 시공역량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건설업 내 토목공사업의 등록 기준이 기술자 6명·자본금 7억원 이상·사무실 보유로, 전문건설업 내 토목사업의 등록

뉴스포커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향

- 1단계, 예외규정 신설 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보완·건산법 개정
- 최종적 건설산업 통합법 제정 등
- 단계적·합리적인 업역 손질 필요

기준이 기술자 2명·자본금 2억원 이상·사무실 보유로 규정돼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진단과 선진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생산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체계 개편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에 따른 업체 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 생산체계를 혁신해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생산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건설공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

회’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체계 개편안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 업역과 업종에 대한 단계적 조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단계로 예외규정 신설과 시범사업 운영, 2단계로 시범사업 보완과 건산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록 기준의 경우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례로 중소기업은 기술자 보유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기술자 보유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만 기술자 보유 조건을 낮추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등록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정책 목표와 기업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부딪치는 게 한들이 아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